

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4. 2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4. 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0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1999. 4. 1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원미구보건소장 이법석)

가. 제안이유

○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(1999. 2. 8)으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관련사항 개정 및 행정절차법과 부합하지 않은 서식의 삭제 등 관련사항 개정

나. 주요골자

○ 과태료 부과규정 폐지 및 변경(안 제4조 별표)

-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부과조항 삭제(청소년보호법 시행일인 1999. 7. 1일부터 시행)
- 법 제12조제2항의 500인 이상 사업자 등에 대한 보건교육실시 의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(법개정 시행일인 1999. 8. 9일부터 시행)

- 과태료 부과기준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향조정
예) 1차 30만원, 2차 40만원, 3차 50만원 → 1차 40만원, 2차 70만원, 3차 100만원
-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진술을 받음에 따라 자인서 징구규정 폐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의견진술 내용에 자인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따로 자인서를 받는 것은 이중행정행위가 아닌가요?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인서를 안 받고 의견진술만 받았을 경우 문제는 없는가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습니다. 행정절차법을 완화하고자 2번 도장 찍는 것은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민편의 행정을 하고자 자인서 징수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큰 문제는 없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141 호
의결년월일	99. 4. 15 (제70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4. 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(99. 2. 8)으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관련사항 개정 및 행정절차법과 부합하

지 않은 서식의 삭제 등 관련사항 개정

□ 주요골자

○ 과태료 부과규정 폐지 및 변경(안 제4조 별표)

-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부과조항 삭제(청소년보호법시행일인 1999. 7. 1일부터 시행)
- 법 제12조제2항의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대한 보건교육실시 의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(법개정 시행일인 1999. 8. 9일부터 시행)
- 과태료 부과기준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향조정
예) 1차 30만원, 2차 40만원, 3차 50만원 ⇒ 1차 40만원, 2차 70만원, 3차 100만원
-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진술을 받음에 따라 자인서 징구규정 폐지

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제 호

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를 삭제하고,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제4조중 “별표”를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제6조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3조제2호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제3조 및 제4조별표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[별 표]

과태료 부과기준

위 반 내 용	근 거	부과금액(단위 : 만원)		
		1차	2차	3차
1.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	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	40	70	100
2.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	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	40	70	100
3.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제1항	40	70	100

1.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
2. 위반행위 차수의 기준적용은 최근 1년 간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부과를 받은 날부터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부과대상) (생략) 1. (생략) 2.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3. (생략) 4.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	제3조(부과대상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(삭제) 2. (현행 제3호와 같음) 3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제6조(자인서 징구) 관계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·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.	(삭제)

신·구조문 대비표

위 반 내 용	근 거	부과금액 (단위:만원)			위 반 내 용	근 거	부과금액 (단위:만원)		
		1차	2차	3차			1차	2차	3차
1.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	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	30	40	50	40	70	100
2.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	동법 제9조제3항	10	20	30	(삭제)	(삭제)	(삭제)	(삭제)	(삭제)
3.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	동법 제9조제4항	30	40	50	2.	40	70	100
4.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	동법 제12조제2항	30	40	50	3.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제1항	40	70	100

<삭 제>

(별지 제2호 서식)

자 인 서

시설(업소)명		소재지	
대표자 성명		주민등록번호	
대표자 주소		전화번호	

본인은 상기 시설(업소)의 자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.

다 음

- 1.
- 2.
- 3.

년 월 일

성명 :

(서명 또는 날인)

부 천 시 장 귀하